## 요 약

- 한국의 건설산업 전반에는 허위 업체 설립, 의도적 폐업과 재진입, 과장 및 허위 신고 등 불성실 관행이 만연되어 있어 ‘ 양심적이고 성실한 건설업체 ’가 오히려 ‘ 손해 ’를 본다는 냉소적인 피해 의식이 팽배해 있음.
  - 특히, 소규모 공공공사의 수주가 이른바 ‘ 운찰제 ’로 운영되면서 오로지 당첨 확률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허위 업체가 난립하고 있음.

- 이러한 불성실 관행이 만연된 직접적 원인은 부적절한 규제 완화 조치였음.
  - 사무실 기준의 폐지, 기술자 수 기준의 완화, 적격 심사시 시공 경험 항목 삭제 등 등록 기준의 완화(1999. 4), 공제조합 출자 임의화(2000. 7) 등 최근에 취해진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가 불성실 업체 설립 비용을 경감시켰음.

- 보다 근본적 원인은 시장 원리의 작동 메커니즘을 제대로 촉진시키지 못한 데 있음.
  - 구매 시점에서 생산물을 확인할 수 없는 수주 생산의 특성상 발주 과정에서 생산자의 생산 능력을 반드시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, 소규모 공공공사의 경우 이것을 생략함으로써 생산 무능력자의 난립을 자초함.
  - 발주 과정에서 건설업자에 대한 생산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를 선정한다면 이는 일반 시장에서 물건을 보지 않고 무작정 구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.

- 건설 시장의 구매자인 발주자의 건설업자에 대한 사전적 평가 능력과 생산물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 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일반 시장에서와 동일한 ‘ 시장 원리 ’가 작동하도록 유도함.
  - 건설기업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함으로써 건설업자가 자신의 모든 정보 - 특히, 사후적 생산물 관련 질적 평가 정보 - 에 의해 평가받도록 함.

- 요컨대, 지금껏 불성실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의존해 온 형식적이고 사후적인 규제 일변도의 단기 처방에서 탈피하여 부적격 업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진입 유인 자체가 사라지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강구해야 함.